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의  
주요내용**

---

---

**2021. 12**

**교통투자평가협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의 주요내용

## 1. 법정사항의 준수

- 타당성 평가시 근거법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임을 잘 모르고 있음
  - 1988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2006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명칭변경)에 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0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하여 '타당성 평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음
  -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건설공사 중 공공교통시설 이외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것이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평가는 건설공사 중 공공교통시설 공사에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행정법상 신법·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공공교통시설에 관한 한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나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와 통합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음(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또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사업도 사업착수 이전에 별도로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함
  - 타당성 평가는 반드시 설계착수 이전에 단독으로 또는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실시해야 함
- 타당성 평가용역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에게 발주하지 않거나 학술연구기관에 연구용역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음(법 제21조 및 법 제27조)
- 타당성 평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법 제18조 제3항)
- 타당성 평가용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발주하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발주하여 타당성 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 (법 제27조)

- 건설기술진흥법에 고시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은 타당성 평가시 필수적인 교통수요예측 부문의 인력이 과소 책정된 반면 타당성 평가에 불필요한 설계부문 인력이 과다 책정되어 있음
- 타당성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정의 대가로 용역을 발주해야 함
-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에 발주할 타당성 평가의 대상사업 목록 및 평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법 제18조 제2항)
- 사업시행자는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타당성 평가서가 투자평가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법 제19조 제1항~제2항)

## 2. 용역발주시 개선사항

- 용역명칭을 ○○○타당성 조사 → ○○○타당성 평가로 변경
- 입찰참가조건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평가 대행자로 변경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자를 도로, 철도, 구조 등의 기술자 외에 교통기술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타당성 평가를 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이들 분야의 참여기술자를 구분하지 않고 발주내역서를 작성 → 타당성 평가분야와 기본계획분야의 참여기술자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내역서를 작성

구 분	새로이 개선된 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
용역명칭	○○○ 타당성 평가용역	○○○ 타당성 조사용역, ○○○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근거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건설기술진흥법
입찰참가자격 보유업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하여 등록된 타당성 평가대행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타당성 평가용역 발주시기 및 방법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와 분리하여 그 이전에 별도용역으로 발주하거나 기본계획과는 통합발주 가능	발주시기 및 방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에 포함시켜 동시에 발주하거나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생략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자의 범위	도로·철도·구조 등 기술자 외에 교통기술자를 사업책임 또는 분야책임기술자로 반드시 포함	도로·철도·구조 등 기술자만 포함 (교통기술자는 불포함)
적용되는 용역 대가의 기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하여 고시한 대가의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한 대가의 기준 또는 학술용역의 대가를 적용
타당성 평가용역과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발주내역서 작성방법	타당성 평가분야와 기본계획분야의 참여기술자를 각각 분리하여 내역서를 작성	타당성 평가분야와 기본계획분야의 참여기술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내역서를 작성하여 업무 구분이 안됨
타당성 평가용역과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보고서 작성방법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검증용으로 별도 작성하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와 구분하여 제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만 작성

<p>도로, 철도사업 등에서 공구분할의 경우 발주방식</p>	<p>타당성 평가를 단독 발주하거나, 대표 공구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p>	<p>타당성 평가는 해당 사업 전체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구별로 발주</p>
<p>타당성 평가 보고서 작성대행자 (참여기술자)</p>	<p>타당성 평가 보고서는 반드시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참여하여 작성하여야 함</p>	<p>평가대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력으로 과업수행</p>
<p>타당성 평가계획 및 보고서 제출</p>	<p>매년 2월 말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타당성 평가보고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p>	<p>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타당성 평가보고서를 검증받아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p>
<p>타당성 평가를 학술연구용역으로 발주</p>	<p>타당성 평가는 투자평가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함</p>	<p>타당성 평가를 학술연구용역으로 발주하여 평가대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p>